

**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
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**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2.

발 의 자 : 권향엽·김준혁·김남근
김 윤·김성희·전종덕
이광희·박 정·허성무
임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,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·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,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·조정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,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·운

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, 제21조의3).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연구기관은”을 “연구기관과 임무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연구기관의”를 “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연구기관의”로 한다.

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3(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

① 연구회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·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세우고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(이하 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
1.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2. 기본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9조제2항 중 “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”를 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임무(제8조제1항 관련)

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임무(제8조제1항 관련)

연 구 기 관	임 무
1. 한국과학기술연구원	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
2.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	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한 연구시설·장비 및 분석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, 연구지원을 하는 연구기관
3. 한국생명공학연구원	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공인프라 구축·운영을 하는 연구기관
4.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과학·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·분석·서비스하고 정보의 분석·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·정책·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·연구하며 첨단정보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·운영하는 연구기관
5. 한국한의학연구원	한의학 이론 및 기술,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·체계적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
6. 한국생산기술연구원	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, 중소·중견 기업의 기술지원을 하는 연구기관
7. 한국전자통신연구원	정보, 통신, 전자,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·미래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
8. 한국건설기술연구원	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기관
9. 한국철도기술연구원	철도, 대중교통, 물류 등 공공교통분야의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
10. 한국표준과학연구원	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
11. 한국식품연구원	식품 분야의 연구개발, 공익가치창출,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을 하는 연구기관
12. 한국지질자원연구원	국내외 육상·해저 지질조사, 지하자원의 탐사·개발·활용,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 변화 대응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
13. 한국기계연구원	기계분야의 연구개발, 성과확산, 신뢰성평가 등을 하는 연구기관
14.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	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

15. 한국전기연구원	전력 및 전기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, 시험·인증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연구기관
16. 한국화학연구원	화학 및 관련 융·복합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기관
17. 한국원자력연구원	원자력의 연구·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,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 연구기관
18. 한국재료연구원	소재분야의 연구개발, 성과확산, 시험평가, 기술지원 등을 하는 연구기관
19.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	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연구기관의 설립) ① 이 법 에 따라 설립되는 <u>연구기관</u> 은 별표와 같다.	제8조(연구기관의 설립) ① ----- ----- <u>연구기관과</u> <u>임무</u> 는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연구기관의</u> 설립 준비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	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 구기관의 업무 및 연구기관의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제21조의3(기관 운영 및 연구 수 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 립 등) ① 연구회는 체계적이 고 예측 가능한 기관 운영 및 <u>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</u> <u>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 ·</u> <u>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</u> <u>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</u> <u>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</u> <u>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</u> <u>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세우고</u> <u>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</u> <u>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(이</u> <u>하 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”라</u> <u>한다)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</u>

제29조(감독관청 등) ① (생 략)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③·④ (생 략)	야 한다. 1.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. 기본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제29조(감독관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의-----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